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5. 18 선고 2017가단108705 판결 [물품매매대금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휴젤 주식회사

피고1. A

2. B

변론 종결2018. 5. 4.

판결 선고2018. 5. 18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. 9. 26.부터 2018. 4. 19.까지 연 6%,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가. 피고 1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나. 피고 2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김진철

별지